

☎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36 / 전송(02)793-8702  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전지숙(6536)/ E-mail: kma-js123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6-09750호

시행일자 2023. 11. 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5515 (2023. 11. 2.)

3.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의료기기법」 제 43조에 따라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수집·분석 등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우리협회로 알려온바, 귀 회에 전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 방법 -

가. 신청 기간 : 23.11.2(목) ~ 23.11.23(목)

나. 제출 서류 : 지정신청서,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계획서 등

\*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

다. 제출 방법 : 이메일(mdsafe@korea.kr) 또는 우편\*

\* (우 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 안전처 행정동 5층 의료기기안전평가과

※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(및 자료)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